

파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2537호

2026년 7월 31일 (금)

차 례

고시 · 공고

- 파주시 고시 제2026-310호 불법농지성토 사고지 등재 고시 1
- 파주시 고시 제2026-317호 불법농지성토 사고지 등재 고시 2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파 주 시

불법농지성토 사고지 등재 고시

「파주시 도시계획조례」제20조의 3, 같은 조례 제20조의 4에 따라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(농지성토)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“사고지”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고지 등재 필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07월 31일

파 주 시 장

1. 고시취지: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변경(절·성토 등)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마산리 176-2번지에 대하여 「파주시 도시계획조례」제20조의 4에 따라 “사고지(불법성토)로 등재함.

2. 사고지 조서(지역·지구 등의 명칭·위치 및 면적 등)

구분	명칭	위치	지목	면적(m ²)	비고
1	사고지 (불법성토)	파평면 마산리 176-2번지	답	9,002	농지불법성토

3. 고시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: 고시일로부터

4.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: 원상복구 완료시

5. 사고지 도면 및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“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·지구 등의 범위가 지정되는 경우로 지형도면자료 생략

불법농지성토 사고지 등재 고시

「파주시 도시계획조례」제20조의 3, 같은 조례 제20조의 4에 따라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(농지성토)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“사고지”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고지 등재 필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07월 31일

파 주 시 장

1. 고시취지: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변경(절·성토 등)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포리 322번지에 대하여 「파주시 도시계획조례」제20조의 4에 따라 “사고지(불법성토)로 등재함.

2. 사고지 조서(지역·지구 등의 명칭·위치 및 면적 등)

구분	명칭	위치	지목	면적(m ²)	비고
1	사고지 (불법성토)	문산읍 내포리 322번지	전	4,295	농지불법성토

3. 고시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: 고시일로부터

4.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: 원상복구 완료시

5. 사고지 도면 및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“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·지구 등의 범위가 지정되는 경우로 지형도면자료 생략